

2022 알아두면 쓸데있는 어업인 복지서비스

어업인 복지에서 수산계학생 장학금까지
소득복지과 사업설명집



2022 알아두면 쓸데있는
어업인 복지서비스

어업인 복지에서
수산계학생 장학금까지
소득복지과 사업설명집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tents

2022 알아두면 쓸데있는 어업인 복지서비스

1. 어촌생활돌봄지원	4
2. 어업활동지원	5
3. 건강보험료 지원	6
4. 연금보험료 지원	7
5.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예방교육	8
6.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9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10
8.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14
9.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17
10. 이동수리소 지원	22
11. 수산장비임대	23
12. 수산장비구입(용자)	24
13. 수산후계인력장학금	27
14.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30
15. 수산업경영인	31
16. 창업어가 멘토링사업	34
17. 숙련기능인력(E-7-4) 수산분야 고용추천제	35
18. 어업경영체 등록	37



1 어촌의 고령·다문화가정에 봉사자가 찾아갑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5~6

임신·출산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어업인과 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조손 가구에 어촌생활돌봄이(봉사자)가 찾아갑니다.

대상 가사활동이 어려운 어가, 어촌 거주자 및 사회복지시설

※ 어촌거주 지원 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대 상		지원일수
어업인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연간 최대 12일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가구	
	• 임신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최대 24일
어촌거주자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최대 12일
	•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사회복지시설	• 읍·면지역 경로당, 경로당과 유사 성격의 공동시설	최대 24일

내용 ● 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등을 지원

● 다문화 가정 및 65세 이상 가구에 한글교실, 안부체크, 말벗 활동,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등을 제공

방법 각 주소지 소재 수협에 방문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

문의 ●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02-2240-2267

● 전국 수협영업점

2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5~6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위한 일손(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지원 대상	신청기간	지원일수
1주일 이상 요양진단	진단일 이후 진단 기간 내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 3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15일 이내	
교육 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 후 7일 이내	가구당 연간 최대 60일
임신 및 출산	임신 및 출산 후 90일 이내	
4대 중증 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수술(입원) 및 퇴원(통원치료) 후 6개월 이내	

※ 치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어로활동가능여부 판단

내용 대체 인력 일당 10만 원 기준 80%는 정부지원, 나머지는 어가 부담

※ 10만원/1일 초과시 최대 8만원 지급, 미만의 경우 지급금액의 80%지원

방법 각 시·도 담당사무소에 신청

※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 제출

- 문의**
-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9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1-458-7466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
 - 강원도 환동해본부 033-660-8362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 경북 환동해지역본부 054-880-7720

3 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5~6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2022년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 포함
 ※ 농어촌 : 읍·면지역,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
 준농어촌 : 농어촌지역 외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 등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하여 보험료 고지서를 발부
 ● 어업인 건강보험료 최대 28%경감(월 최대 101,612원/세대)

구분	지원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보험료 금액 기준	지원 금액
정률지원	1,800점 이하 (보험료의 28%)	~362,700원	월 최대 101,556원
정액지원	1,801~2,500점 (1,801점 보험료 28%)	362,901~503,750원	101,612원
지원제외	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소득, 재산 및 자동차의 각 등급별 부과점수 합산		

방법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신규신청자는 공단 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된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공단 지사에 제출,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은 신청서 제출없이 전화 신청 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보험공단 누리집(www.nhis.com) 참고

4 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5~6

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원제외)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대상 소득금액이 연 6천만원 이상
 ② 재산이 10억원 이상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

방법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신청자는 공단 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된 신청서를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공단지사에 제출, 단,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은 신청서 제출없이 전화 신청 가능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보험공단 누리집(www.nhs.or.kr)의 '연금정보'를 참고



5 질환예방교육으로 어업인의 건강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1~5462

어업활동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서도 제공합니다.

- 대상** 어업인, 어촌 주민
- 내용** 질환 예방 교육 및 안내서 제공
 - (예방교육)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근골격계 등의 질환 예방교육을 무상지원(예방교육 신청은 어업안전보건센터에 문의)
 - 혈압·혈당 등의 간단한 검진, 건강상담, 스트레칭법 등의 운동처방, 어업인 질환 예방법 교육, 안내서 배포 등



- (안내서 제공) 어업안전보건센터 누리집에 질환 발생 원인과 예방 안내서, 어작업 안전 재해 예방 매뉴얼, 허리·손목·어깨 통증 부위별 스트레칭법 등을 게시



방법 누리집 : 어업안전보건센터(www.koreanfisherman.org)

- 문의** 질환 예방 교육 신청 및 안내서 수령 등을 위한 문의
 - 경상대학교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055-750-9602
 - 조선대학교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062-714-3971
 -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051-890-5705

6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3~5464

여성어업인의 어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대상** 여성어업인(만 50세 이상 만 69세 이하 1,500명)
 - ※ 20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범 실시
- 내용**
 - 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등
 - 여성어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
 - (검진내용) 설문, 안과검사, 근골격계질환 선별검사, 골절위험평가,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호흡기계질환, 예방교육 등으로 구성
 - (지원사항) 여성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비용의 90% 지원(10% 자부담)
- 방법**
 - 3/4분기 중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 4/4분기 중 건강검진 실시 예정
-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4



7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8, 5471

어업작업으로 인해 어업인에게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50% 이상을 지원합니다.

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
 ※ 2021.10월부터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 가능
 ※ 가입대상 제외자: 최근 2년 이내 보험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내용

- 총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지자체 지원 별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총보험료의 70%를 지원
- 어업작업 중 부상·질병·상해·사망 발생 시에 보험급여 지급
 - 사고 : 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 하는 행위 포함)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질병: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 상품구성
 - 주계약: 개인형 3종, 장애인형 1종, 산재형 2종(국비 지원 전 금액)

구분	개인형			장애인형	산재형	
	1종	2종	3종	1종	1종	2종
보험료	109,500원	159,000원	218,300원	134,000원	268,700원	336,200원

※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등 등 10개 종류의 급여가 있으며, 유형별로 급여 한도 다름

- 특약: 장제비 지원, 재해사망 등 6개 특약

구분	장제비	재해사망	교통재해사망	재해골절	종료일 연장	사망보험금 연장
보험료	13,400원	17,400원	8,300원	8,600원	-	-
보험금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만원	-	만기 후 30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확인

방법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 방문
 ※ 방문 시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면허·허가필증, 어업인확인서 등)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 더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 누리집(www.suhyup-bank.com)의 '금융상품'을 참고

자주 하는 질문

어선원보험에 가입 중인데 어업인안전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은 안전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합니다.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을 겸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서로 보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업재해 또는 어업질병위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어업작업 관련 사고의 구체적 인정기준

가. 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나. 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

- 1) 주거와 어업작업장 간의 어업용기계(선박, 트랙터, 화물자동차 등 동력장치가 부착되어 어업에 이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사륜구동 이륜자동차,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동(다른 사람의 어업용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하여 이동한 경우를 포함한다)중 발생한 사고
- 2) 주거와 어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수산물 운반작업(손수레, 달구지 또는 어업용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함)
- 3) 수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
- 4) 주거와 어업작업장 간의 어업용자재(어망, 양식용 사료 등 수산동물·식물을 채취, 포획, 양식하거나 소금 생산작업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말한다)의 직접 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
- 5)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용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어업작업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포획, 채취, 양식한 수산물 또는 자신이 직접 생산한 소금을 주원료로 하여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타인이 포획, 채취, 양식한 수산물 또는 소금을 주원료로 구입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2.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가.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파상풍, 연조직염

나. 그 밖에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일광노출에 의한 질병, 근육 장애, 윤햄막 및 힘줄 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 기타 연조직 장애, 기타 관절연골 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군, 팔의 단일 신경병증,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급성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화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기타 그 램 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페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리켓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차 썩썩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22년도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안) 〉

급부명	개인 1형	개인 2형	개인 3형	장애인형	산재1형	산재2형
유족급여금	3,000만원	6,000만원	1억원	5,500만원	1억원	1억2천만원
장례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행방불명 급여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55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장해급여금	3,000만원	6,000만원	1억원	5,500만원 5,500만원	1억원	1억2천만원
	2,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4,5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6,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8,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1억원 × 해당장해 지급률
입원(휴업) 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1회120일)			1일당 2만원 (1회120일)	1일당 4만원 (1회120일)	1일당 6만원 (1회 120일)
간병급여금	5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재활급여금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해당장해지급률				1,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3,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진단 1회당) 30만원			(진단1회당) 30만원	진단 1회당 30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수술 1회당) 30만원			(수술1회당) 30만원	(수술 1회당) 30만원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입원의료비 : 20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5,000만원 이내	
	통원치료 : 외래 20만원 이내			외래 20만원이내	외래 20만원이내	

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8, 5471

조업활동 중 재해가 발생하거나 해상사고로 어선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으로 해결합니다.

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어선 소유자(원양어선 제외)

구분	의무가입 대상	임의가입 대상
어선원보험	3톤 이상 어선소유자	3톤 미만 어선소유자
어선보험	-	전 톤수

※ 3톤 이상 어선소유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
 -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승선하는 어선, 관리선 지정어선(정치망, 허가신고어선 제외), 내수면어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선 등은 임의가입 대상

내용 어선 톤급별로 보험료 15~71% 지원

구분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어선원	71%	63%	39%	31%	15%	
어선	71%	63%	15%			

※ 보험가입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하여 어업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처분 시 국고보조 지원 제외

● 보험료 산출 기준

※ 보험료율은 톤급별로 상이하고, 업종·사고율에 따라 할인·할증(3년간 손해율 기준 최대 50%)이 적용되며, 일시납·안전설비설치 등의 경우 추가 할인 가능

- 어선원보험 = 어선원의 연간 임금총액(월별 승선평균임금 합계) × 보험요율
- ※ 어선소유자가 신고한 어선원의 임금, 단 자료 불분명 시 해양수산부 고시금액 적용
- 어선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의 부상·질병·상해·사망 발생 시, 어선보험은 침몰좌초·총돌·화재·손상 등 어선의 사고 시에 보험급여 지급

- 어선원보험

구분	지급사유 및 기준
요양급여	• 직무상 : 치유 시까지 • 직무외 : 3개월 이내
부상 및 질병 급여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일시보상급여	•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지급
유족급여	•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례비	•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행방불명급여	•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소지품유실급여	•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지급

- 어선보험

구분	지급사유 및 기준	
주 계 약	전손보험금	•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분손보험금	•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총돌손해보험금	• 총돌로 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임의구조비 손해방지비용	•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해양오염 방제비용	•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특약	•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총돌에 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자기부담금보상	

방법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보험)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 더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누리집(www.suhyup.co.kr)의 '지식정보-정책보험'을 참고

자주 하는 질문

어선을 매수하여 어선원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어선원 및 어선보험은 어선단위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므로 선박 인수 전 해당 어선의 조정계수(어선 개별 할인·할증요율)를 확인해야 과다 보험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77톤 어선과 2.99톤 어선 2척을 소유중인데 왜 2.99톤 어선도 어선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까?

- 어업의 특성상 동일 사업장(선주)에 취업한 고용선원은 언제든지 어선을 번갈아 가면서 승선할 수 있고, 동일 선주에 고용된 선원간에는 동일한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3톤 미만 어선도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어선보험을 가입시 반드시 어선평가액의 100%를 가입해야 합니까?

- 평가액의 일부 가입도 가능하나, 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 보험가입비율(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에 따라 비례보상되어 실 손해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9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8, 5471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피해를 입으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보상합니다.

대상

28개 품목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

구분	품목
본사업 17개, 전국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시범사업 11개, 일부지역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사업지역·판매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확인

내용

- 순보험료의 50% 지원(지자체 지원 별도)
 ※ 보험료는 권역별(23개)로 상이하고, 구조 및 시설할인, 개인별 할인·할증(최대 50%), 무사고 할인(5%) 적용 가능
-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저염분수, 고·저수온, 조수, 한파, 대설, 이상수질, 가뭄으로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피해 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험금 지급
-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 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 적용가격은 매월 수협중앙회(www.suhyup.co.kr) 홈페이지에 공시
-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품목별 보험대상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2 확인

방법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절차 : 가입 신청 → 현지조사 및 청약서 작성(양식장 원장 확인, 가입금액 결정 등) → 보험료 납부 → 인수심사 → 보험증권 발급
- 납입방법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2회 또는 4회 분할 납입 가능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 더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 누리집(www.suhyup-bank.com)의 '금융상품'을 참고

자주 하는 질문

가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양식장 원장(수협 서식),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시설임차 양식장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입식 증빙을 할 수 있는 입식신고서, 계산서 등을 구비 후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식보험 가입 후 일부 출하(또는 입식)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부 출하(또는 입식) 후 지자체에 신고(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하시고, 영업점에 방문하여 양식수산물변경기록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가입금액을 감액(또는 증액)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판매기간

보험 대상품목	사업지역	판매기간
본 사업 넙치, 전복, 참돔 조피볼락,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강도다리, 능성어	전국	1.1~6.30 10.1~12.31 (단, 참취치는 5.1~6.30)
		3.1~9.30
		장기형 1.1~6.30 10.1~12.31
		단기형 6.1~9.30
		연중
다시마, 톳		1.1~2.29 10.1~12.31
시범 사업 김	전남 : 해남군·신안군·고흥군·완도군·장흥군·목포시·무안군·진도군·함평군 충남 : 서천군·태안군·보령시 경기 : 안산시·화성시 / 인천 용진군·강화군 전북 : 군산시·부안군, 부산 강서구	9.1~12.31
	경남 : 통영시·남해군·고성군·거제시 강원 : 고성군·삼척시·강릉시·양양군·속초시 경북 : 경주시·포항시·영덕군·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4.1~10.31
	전남 : 고흥군·진도군, 부산 기장군 경남 : 통영시·거제시	9.1~12.31
	전남 : 영광군·함평군·강진군·무안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영암군·나주시·순천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해남군·장성군 전북 : 고창군·김제시·남원시·완주군	1.1~6.30 10.1~12.31
	강원 : 영월군·정선군·춘천시·평창군·삼척시·철원군·횡성군·태백시 경북 : 구미시·상주시/충북 보은군·충주시 경기 : 가평군	1.1~6.30 10.1~12.31
	경남 :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7.1~11.30
	제주도	1.1~6.30 10.1~12.31
	충남 : 홍성군·논산시·당진시·부여군·아산시·예산군·청양군 전북 :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완주군·부안군·고창군·장수군·임실군	1.1~6.30 10.1~12.31
	전북 :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완주군·부안군·고창군 전남 : 함평군	1.1~6.30 10.1~12.31
	전남 : 완도군 고금면	5.1~6.30 10.1~12.31

품목명	수산물 피해			시설물 피해
	주계약	특약		특약
		전기적장치	기타	양식시설물
넙치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저염분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
전복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수온	-	이상수질	태풍, 해일, 풍랑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	태풍, 해일, 풍랑, 적조	-	고수온, 이상수질 저수온(단, 참취치는 가입불가)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	태풍, 해일, 풍랑 (시설물 피해 보상)	-	-	-
굴	태풍, 해일, 풍랑, 적조	-	이상조류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김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및 수산질병	-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멍게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미역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조수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뱀장어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강도다리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저염분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
홍합	태풍, 해일, 풍랑, 적조	-	이상조류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다시마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조수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송어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가뭄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품목명	수산물 피해			시설물 피해
	주계약	특약		특약
		전기적장치	기타	양식시설물
육상수조식 들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저염분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
가리비	태풍, 해일, 풍랑, 적조	-	이상조류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툰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조수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육상수조식 전복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이상수질	-
미더덕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태풍, 해일, 풍랑
오만둥이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태풍, 해일, 풍랑
터봇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이상수질	-
메기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향어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전복종자	태풍(강풍), 해일, 대설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태풍(강풍), 해일, 대설
육상시설물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시설물 피해 보상)	-	-	-

10 어업용 기자재를 점검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5~5466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시·벽지 어촌지역에 찾아가 어업용 기자재를 수리·점검**합니다.

대상 도시·벽지(내수면 포함)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 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에 한정/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제외

내용 ● 어업용 기자재 등 수리

수리대상	세부항목
어선용 기관	디젤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
어업용 장비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 항해등, 레이더, GPS플러그 등
양식용 장비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기자재	

-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1회 10만원을 초과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
 -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연 20만원한도 내에서 2회 이상 지원가능
- ※ 부품이 아닌 연료유 엔진오일 등은 무상 지원 불가

방법 지자체에서 어촌계 등과 협의하여 어촌계별로 이동수리소 운영

-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9
 - 울산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2
 - 강원 환동해본부: 033-660-8329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1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1-458-7462
 - 경기 수산기술지원센터: 031-8008-8363
 - 충남 자원기술연구소: 041-635-7859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2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16

11 수산장비를 임대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5~5466

선별기 등 어업현장에 필요한 **수산장비**를 지자체를 통해 **어업인에게 임대**합니다.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어업권이 있는 수협

- 내용** 수산장비 구입·제작 지원 및 임대
- **구매장비**: 다목적 해상작업대, 해상크레인, 선별기, 산소발생기, 다목적 양식장 관리선 등 어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수산장비
 - **추진방식**: 시·군에서 수산장비를 구매(위탁관리자 대행구매 가능) 후, 수협 등을 위탁 관리자로 지정하여 수산장비 임대 및 관리

- 방법**
- 지자체 관리 장비 및 계획 따라 지원
 - 임대 신청인은 지자체 또는 위탁관리자(수협 등)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 가능

문의 지자체 수산자원과 또는 어업기술지원과
 ※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누리집을 참고.



12 수산장비 구입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5~5466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수산장비 구입비용을 용자지원합니다.

대상 「수산업법」 및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내용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비용 용자지원
 - 지원장비
 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규정 별표4 및 별표6에 있는 어업용 기자재(단, 어선구입·제작 제외)
 ☞ 붙임1 확인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산장비(다만, 단순 부품은 제외)

대출금액	1억원(장비가가격의 80%이내)	
금리	고정	어업인(개인) 2.0%, 어업법인·생산자 단체 등 3.0%
	변동	대출 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대출기간	8년(1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방법

-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 대출은행: 수협(대출자격조사)

문의 지자체(시·도) 담당 부서(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누리집 소식을 참고

붙임1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어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별표 4)

- 어망
- 부자
- 집어등(집어용 안정가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 자동조상기
- 양망기
- 양승기
- 통발
- 초호
- 낙시
- 연승
- 발장
-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자물안경 및 태약
-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 선박용 무선전화기
- 선박용 기관
- 선외내연기관(전기추진기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 어선용 레이더
- 위성항법장치
-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 어군탐지기
- 어선용 냉동기
- 어망감시기
- 샤클(Shackle)
- 코스(Course)
- 삭제 <2003.12.30>
- 전개판
- 물뿔(Sea Anchor)
- 양식용수차
- 김양식용유기산
- 팜사
- 진주양식용핵
- 양식용양수기
-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 패각분쇄기
- 삭제 <2003.12.30>
- 어선용 호중
- 삭제 <2003.12.30>
- 어선용 기적
- 어선용 수온계
-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양식장 관리용 선박(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김양식용 김발지지대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별표 6)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
9. 구멍 부기·동익(어선용에 한한다)
10. 삭제 <2014.2.21>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8. 수산물 선별기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축매기기
24.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만 해당한다)
25.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26. 어업용 산소발생기
27. 양식장용 액화산소
28. 수산물 양식용 파판(播板)
29. 전복 양식용 쉼터(shelter)(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한다)
30. 채롱망(採籠罔, 조개류 양식용만 해당한다)
31. 통발착탈기
32.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한다)
33. 김 종자 생산용 굴껍데기
34.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13

수산계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4, 5467

해양수산계열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해양수산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고등학생

내용 장학금 지급

- 대학생 : 한 학기 250만원(1인 기준)

선발기준(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해양수산대학 해양수산계열* 재학생
※ 대학 현황: 붙임1 참조(6개 대학, 6개 단과대학, 62개 학과)
- 졸업 후 어업 등 해양수산분야 진출 의지가 강한 자
- 직전 학기 성적(백분위 80점이상), 이수학점(12학점 이상)
- 어업활동 계획서 등 심사

- 고등학생 : 연간 50만원(1인 기준)

선발기준(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수산계 특성화 고등학교 해양수산계열 재학생
- 각 학교별 재학생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학교 추천
※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수 비율로 배정

방법 누리집 : 농어촌희망재단(www.rhof.or.kr)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246
※ 선발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등 문의

※ 아래 해양수산계 대학 소속 해양수산계열학과 재학생에 한해 수산후계장학금 지원 가능
(매년 변경될 수 있어, 농어촌희망재단 문의 필요)

■ 6개교, 6개 단과대학, 62개 학과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1	강릉원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해양생명과학과
2	강릉원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수산생명의학과
3	강릉원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해양식품공학과
4	강릉원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해양생태환경학과
5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기계시스템공학과
6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수산경영학과
7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수산경영학과
8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에너지기계공학과
9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정보통신공학과
10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조선해양공학과
11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경찰시스템학과
12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미래산업융합학과
13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산업융합학과
14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양식생명과학과
15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식품공학과
16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식품생명의학과
17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토목공학과
18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환경공학과
19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스마트자동화공학과
20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지능형통신공학과
21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22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경찰학과
23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
24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수산생명의학과
25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생명과학과
26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해양생물자원공학과
27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	-
28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29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
30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해양생산학전공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3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해양경찰학전공
32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	수해양산업교육과
33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	생물공학과
34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	수산생명의학과
35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식품과학부	-
36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37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38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수산생명과학부	-
39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수산생명과학부	양식응용생명과학전공
40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수산생명과학부	자원생물학전공
4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
42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해양수산경영학전공
43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자원환경경영학전공
44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	수산생명의학과
45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	해양경찰학과
46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	해양바이오식품학과
47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	기관시스템공학과
48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	양식생물학과
49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	조선해양공학과
50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	해양생산관리학과
51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	해양융합학과
52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53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지구해양학과
54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토목공학과
55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산업경찰학과
56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시스템공학과
57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환경공학과
58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의생명과학부	-
59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의생명과학부	수산생명의학전공
60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의생명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61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수산생명의학과
62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해양생명과학과

14 어업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4, 5467

수산분야 일자리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구직자-구인자를 연결합니다.

대상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구인구직자

내용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구직자와 구인자 연결 등
 - 어업인 일자리 포털(www.happybada.co.kr)을 통해 일자리 구인 및 구직 정보제공
 - 구인구직 상담, 취업 지원 서비스(동행면접 등 제공)
 - 수산계고교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 연결 및 채용 의향 기업 발굴

방법 어업인 일자리 포털(www.happybada.co.kr)

문의 수협중앙회 일자리지원센터(중앙센터) : 080-550-3651



15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3~5464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선발하여 수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융자, 이차보전)합니다.

대상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 업무 수행관서에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을 선정

자격	
어업인 후계자	• 연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여야 함
우수경영인	• 학력 및 교육실적 ①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20시간 이상 교육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1일 교육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산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 ③ 관련 학교 미졸업자 또는 교육실적이 없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사후교육 이수대상자 : ①, ③의 경우는 선정 후 1년 이내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후교육(2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연령 :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 영어경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 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년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 어업기반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를 지원[기준금리-대출금리(2.0 또는 1.0%)]

- 대출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300백만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00백만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분야	사용용도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중고선) 선령과 관계없이 구입가능, 어획물 운반선 포함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권 취득비용)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 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 지원 ※ 다른 양식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지원 불가 •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 종자 및 친어 등 구입 ※ 종자 및 중간 육성어 입식의 경우는 시·도(시·군)에 입식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 ※ 치어·치패 등 입식비는 입식신고를 이행한 경우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수산물가공 및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최대 1.5억원 이내) ※ 공장 또는 시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수산물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차량·설비 등 - 수산물 보관, 가공·제조, 유통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염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 불가하나,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음 ※ 중고어구 및 장비 구입 시에는 자금 사용이 불가하나, 판매업체, 기관을 통한 구입은 가능함

방법 각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 업무 수행관서 신청

문의

- 수협중앙회 : 02-2240-8521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팀 : 051-209-0932
-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 052-229-3021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4
- 강원도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 033-660-8353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 031-8008-8358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055-254-3523
- 경상북도 환동해본부 어업기술지원과 : 054-240-0341
- 전라남도 전남해양수산물과학원 운영지원과 : 061-550-0656
- 전라북도 수산연구과 : 063-290-6960
-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 041-635-7853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 : 043-220-652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5



16 창업어가에 후견인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4, 5467

창업어가에 수산업경력이 풍부한 멘토(후견인)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 어업인
 - 귀어 후 3년 이내인 자
 - 당해 연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자
- 내용**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 도모를 위해 후견인(멘토)을 지원

 - 내용 : 어업인 후계자, 귀어가 등 수산업경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인력이 창업할 경우, 기술, 경영, 교육 등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 교육 지도 등 지원
 - 신청시기와 배정인원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으나 1~2월 중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 수산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 선정 시 매월 최소 6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 교육·지도
 - 후견인(멘토) 자격 : 수산신지식인, 수산분야 전문가(수산, 지도, 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계 대학교수 등), 우수경영인, 수산양식, 제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 방법**

각 시·도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신청
- 문의**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팀 : 051-209-0934
 -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 052-229-3021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7
 - 강원도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 033-660-8328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 031-8808-8356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055-254-3523
 - 경상북도 환동해본부 어업기술지원과 : 054-240-0322
 - 전라남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061-550-0656
 - 전라북도 수산연구과 : 063-290-6961
 -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 041-635-7853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 043-220-6525

17 숙련기능인력(E-7-4) 수산분야 고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8, 5471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중 150명에게 법무부가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점수제 평가 가점(최대 10점)을 부가합니다.

- 대상**

연근해어업, 양식업 분야에서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합법 고용허가제(E-9), 방문 취업(H-2)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 연도에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업주(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에 대해 고용추천 발급 제한
- 내용**

고용추천서 발급(최대 10점까지 부여)

 - 추천기준 : 영세 어가 및 환경·자원보호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가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 가산점 부여

구분	양식업	연근해어업
특별	HACCP 인증 업체, 양식보험 가입업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 등	10톤 미만 어선 보유,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 참여 업체,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참여
공통	3년 간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없는 업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3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준은 5점 부여

 - 허용인원: 150명 (E-9, E-10 포함)
- 방법**

신청서류 제출(고용주, 우편 또는 비자포털)

 - ⇒ 서류심사(해수부) ⇒ 고용추천서 발급(유효기간 1년)
 - ⇒ 법무부 제출(소득증빙, 한국어능력시험결과 등 포함)

※ 법무부 제출 서류 및 점수 기준 등은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뉴스·공지-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8, Fax 044-200-5479)

 - ※ E-10근로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4)에 문의 필요
 - ※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

〈양식업 추천 기준〉

항목	내용	배점
HACCP 인증 업체	- 양식장 시설에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각 5점
배합사료 사용 업체	- 배합사료 100% 사용 양식업체	
보험 가입 업체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양식업체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양식업체	
우수 수출 업체	- 양식수산물 연간 10만불 이상 수출 양식업체	
관련법령 준수 업체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없는 업체	3점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연근해어업 추천 기준〉

항목	내용	배점
영세어가	- 10톤 미만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어선)	각 5점
관련법령 준수 업체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없는 업체(어선)	
수산자원회복 참여 업체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제도 참여 업체	
	- 자율휴어기 참여 업체(어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업체(어선)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3점

18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소득복지과 ☎ 044-200-5465~5466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국가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 대상**
- 어업인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내용 어업경영 정보등록 후 수산직접직불금,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국가 용자사업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법**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서류 제출
- **신규등록 절차**
: 신청서류 제출(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 ⇒ 신청서 접수(지방청) ⇒ 서류검토(필요시 현지조사) 후 등록통지서 발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 **변경등록 절차**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후 변경등록통지서 발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 ※ 변경등록 사항
- ① 등록통지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요청(서면, 전화))
 - ② 경영정보 사실이 변경된 경우
 - ③ 상시조사(현행화) 결과 변경내용이 확인되어 이를 통보받은 경우

- 구비서류

공 통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본,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필증 사본 또는 행사계약확인서 등
+	
60일 이상 조업실적	선박출항·입항신고 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또는 어촌계 조업일지 등
120만원 이상 판매액	(거래내역에 대한) 입금확인서 또는 판매계산서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어촌계 구매확인서 등

※ 자세한 구비서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

문의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부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51-609-6516
- 부산청 제주단 : 064-720-2756
- 인천청 해양수산환경과 : 032-880-6493
- 여수청 해양수산환경과 : 061-650-6131
- 마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55-981-5185
- 울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52-228-5641
- 동해청 해양수산환경과 : 033-520-6247
- 군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63-441-2266
- 목포청 해양수산환경과 : 061-280-1785
- 포항청 해양수산환경과 : 054-245-1654
- 평택청 해양수산환경과 : 031-680-7285
- 대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41-660-7676

※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의 업무소개란 등을 참고

